|  |  |  |
| --- | --- | --- |
|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2017년 9월 5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령 제36호로 공표, 2020년 10월 23일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31호에 따라 개정1.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경영 행위를 규율하며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과 공중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을 제공자, 제3자 플랫폼 및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통하여 외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로 약칭)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외식서비스와 그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국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며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직 및 전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주체업태, 경영항목에 따라야 하며 경영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서의 비준을 득한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소재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서에 비안(備案)한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소재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내용은 도메인 네임, IP주소, 전신업무경영허가증 또는 비안(備案)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 설립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내용은 지사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 등을 포함한다.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비안(備案)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심사등기 제도, 식품안전 위법행위 제지 및 보고 제도, 중대 위법행위 발생 시 플랫폼 서비스 중단 제도, 식품안전 사고 처리 제도 등 제도를 수립 및 집행하여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상에 관련 제도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식품안전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식품안전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 관리능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를 해당 직종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을 심사하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방식 등 정보를 등기하여야 하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경영장소 등 허가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와 식품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식품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외식서비스 경영활동 메인 페이지에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을 공시하여야 한다. 식품경영허가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업싱 갱신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웹사이트에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주소 및 계량화된 등급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음식의 명칭과 주요 식재료의 명칭을 인터넷상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독성이 없고 청결한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분해성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음식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음식배달업체에 위탁하여 배달하는 경우 음식배달업체는 음식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배달원은 개인위생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독성이 없는 배달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음식배달원은 배달식품을 확인하고 배달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기록 의무를 이행하여 식품명칭, 주문시간, 음식배달원, 배달시간 및 배달주소를 포함한 온라인 음식주문 정보를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정보는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발췌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행위를 제지시키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소재지의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신고·제보 처리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제보 방식을 공개하여야 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신고·제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음식·식품을 가공·제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식재료 통제 요구를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하며 합법적 자격을 보유한 자로 식재료 품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선택하거나 식재료 생산기지·슈퍼마켓으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식재료 관련 증표 확보 의무와 입고검사 기록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과 식재료를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공 과정에서 가공대기 식품·식재료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부패·변질, 유지산패, 곰팡이·벌레가 발생하였거나 이물질이 셖여있거나 가짜품·불순물이 들어있거나 감관적 형태가 이상한 경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식품 저장시설, 가공시설, 세척·소독시설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보온, 냉장, 냉동 등 시설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및 점검하으로써 관련 시설·설비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내 가공작업 구역에서 식품을 가공하여야 하며 주문받은 음식을 기타 식품경영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음식·식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식품과 동일한 품질안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독성이 없고 청결한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식품을 포장하여 음식배달원이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배달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9.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신선유지, 보온, 냉장 또는 냉동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을 배달함에 있어 식품안전 보장이 가능한 보존·배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그가 조직한 모니터링에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도록 한다.
11.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로부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보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12.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13.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거래 활동에 대한 기술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록과 자료는 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의거로 사용할 수 있다.
14.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소비자가 신고·제보한 단서에 대하여 지체없이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제보 대상자가 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한다.
15.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조사처리 과정에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6.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을 어기고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7.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그 지사 또는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가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을 어기고 해당 비안(備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8.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해당 제도를 수립, 집행 및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9.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안전 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식품안전 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평가 및 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0.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에 대한 심사의무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및 연락방식 등 정보에 대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경영장소 등 허가정보가 진실하지 않은 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와 식품안전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정보 공시 및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이 방법 제13조의 규정을 어기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음식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배달업체가 음식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에 따라 교육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음식배달원이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어기고 안전·무독 배달용기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배달원 소속업체를 처벌한다.
5.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온라인 음식주문 정보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6.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발췌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법행위를 지체없이 제지시키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중대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소비자 신고·제보 처리 제도 수립 의무, 신고·제보 방식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신고·제보를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8조 제(1)호의 규정을 어기고 식재료 통제 요구 수립·실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을 어기고 부패·변질, 유지산패, 곰팡이·벌레가 발생하였거나 이물질이 셖여있거나 가짜품·불순물이 들어있거나 감관적 형태가 이상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8조 제(3)호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 저장시설, 가공시설, 세척·소독시설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보온, 냉장, 냉동 등 시설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및 점검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8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을 어기고 주문받은 음식을 기타 식품경영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제작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음식·식품의 품질안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식품의 품질안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어기고 해당 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어기고 신선유지, 보온, 냉장 또는 냉동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을 배달함에 있어 식품안전 보장이 기능한 보존·배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그 행정처벌결정서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와 정부규장에 소형 음식점의 온라인 경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1.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안전법 위반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외식서비스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본사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산하 체인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상의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3. 이 방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2017年11月6日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36号公布，根据2020年10月23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31号修订）**第一条**　为加强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规范网络餐饮服务经营行为，保证餐饮食品安全，保障公众身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通过第三方平台和自建网站提供餐饮服务的餐饮服务提供者（以下简称入网餐饮服务提供者），利用互联网提供餐饮服务及其监督管理，适用本办法。**第三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指导全国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并组织开展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测。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第四条**　入网餐饮服务提供者应当具有实体经营门店并依法取得食品经营许可证，并按照食品经营许可证载明的主体业态、经营项目从事经营活动，不得超范围经营。**第五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在通信主管部门批准后30个工作日内，向所在地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备案。自建网站餐饮服务提供者应当在通信主管部门备案后30个工作日内，向所在地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备案。备案内容包括域名、IP地址、电信业务经营许可证或者备案号、企业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姓名等。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设立从事网络餐饮服务分支机构的，应当在设立后30个工作日内，向所在地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备案。备案内容包括分支机构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姓名等。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开相关备案信息。**第六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建立并执行入网餐饮服务提供者审查登记、食品安全违法行为制止及报告、严重违法行为平台服务停止、食品安全事故处置等制度，并在网络平台上公开相关制度。**第七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设置专门的食品安全管理机构，配备专职食品安全管理人员，每年对食品安全管理人员进行培训和考核。培训和考核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经考核不具备食品安全管理能力的，不得上岗。**第八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对入网餐饮服务提供者的食品经营许可证进行审查，登记入网餐饮服务提供者的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及联系方式等信息，保证入网餐饮服务提供者食品经营许可证载明的经营场所等许可信息真实。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与入网餐饮服务提供者签订食品安全协议，明确食品安全责任。**第九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应当在餐饮服务经营活动主页面公示餐饮服务提供者的食品经营许可证。食品经营许可等信息发生变更的，应当及时更新。**第十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应当在网上公示餐饮服务提供者的名称、地址、量化分级信息，公示的信息应当真实。**第十一条**　入网餐饮服务提供者应当在网上公示菜品名称和主要原料名称，公示的信息应当真实。**第十二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食品容器、餐具和包装材料的，所提供的食品容器、餐具和包装材料应当无毒、清洁。鼓励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可降解的食品容器、餐具和包装材料。**第十三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应当加强对送餐人员的食品安全培训和管理。委托送餐单位送餐的，送餐单位应当加强对送餐人员的食品安全培训和管理。培训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第十四条**　送餐人员应当保持个人卫生，使用安全、无害的配送容器，保持容器清洁，并定期进行清洗消毒。送餐人员应当核对配送食品，保证配送过程食品不受污染。**第十五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自建网站餐饮服务提供者应当履行记录义务，如实记录网络订餐的订单信息，包括食品的名称、下单时间、送餐人员、送达时间以及收货地址，信息保存时间不得少于6个月。**第十六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对入网餐饮服务提供者的经营行为进行抽查和监测。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发现入网餐饮服务提供者存在违法行为的，应当及时制止并立即报告入网餐饮服务提供者所在地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发现严重违法行为的，应当立即停止提供网络交易平台服务。**第十七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建立投诉举报处理制度，公开投诉举报方式，对涉及消费者食品安全的投诉举报及时进行处理。**第十八条**　入网餐饮服务提供者加工制作餐饮食品应当符合下列要求：（一）制定并实施原料控制要求，选择资质合法、保证原料质量安全的供货商，或者从原料生产基地、超市采购原料，做好食品原料索证索票和进货查验记录，不得采购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食品及原料；（二）在加工过程中应当检查待加工的食品及原料，发现有腐败变质、油脂酸败、霉变生虫、污秽不洁、混有异物、掺假掺杂或者感官性状异常的，不得加工使用；（三）定期维护食品贮存、加工、清洗消毒等设施、设备，定期清洗和校验保温、冷藏和冷冻等设施、设备，保证设施、设备运转正常；（四）在自己的加工操作区内加工食品，不得将订单委托其他食品经营者加工制作；（五）网络销售的餐饮食品应当与实体店销售的餐饮食品质量安全保持一致。**第十九条**　入网餐饮服务提供者应当使用无毒、清洁的食品容器、餐具和包装材料，并对餐饮食品进行包装，避免送餐人员直接接触食品，确保送餐过程中食品不受污染。**第二十条**　入网餐饮服务提供者配送有保鲜、保温、冷藏或者冷冻等特殊要求食品的，应当采取能保证食品安全的保存、配送措施。**第二十一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组织监测发现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存在违法行为的，通知有关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组织查处。**第二十二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接到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报告入网餐饮服务提供者存在违法行为的，应当及时依法查处。**第二十三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对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的监督检查，发现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存在违法行为的，依法进行查处。**第二十四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对网络餐饮服务交易活动的技术监测记录资料，可以依法作为认定相关事实的依据。**第二十五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对于消费者投诉举报反映的线索，应当及时进行核查，被投诉举报人涉嫌违法的，依法进行查处。**第二十六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查处的入网餐饮服务提供者有严重违法行为的，应当通知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要求其立即停止对入网餐饮服务提供者提供网络交易平台服务。**第二十七条**　违反本办法第四条规定，入网餐饮服务提供者不具备实体经营门店，未依法取得食品经营许可证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二条的规定处罚。**第二十八条**　违反本办法第五条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以及分支机构或者自建网站餐饮服务提供者未履行相应备案义务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二十九条**　违反本办法第六条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未按要求建立、执行并公开相关制度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三十条**　违反本办法第七条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未设置专门的食品安全管理机构，配备专职食品安全管理人员，或者未按要求对食品安全管理人员进行培训、考核并保存记录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三十一条**　违反本办法第八条第一款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未对入网餐饮服务提供者的食品经营许可证进行审查，未登记入网餐饮服务提供者的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及联系方式等信息，或者入网餐饮服务提供者食品经营许可证载明的经营场所等许可信息不真实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三十一条的规定处罚。违反本办法第八条第二款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未与入网餐饮服务提供者签订食品安全协议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三十二条**　违反本办法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未按要求进行信息公示和更新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三十三条**　违反本办法第十二条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的食品配送容器、餐具和包装材料不符合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按照食品安全法第一百三十二条的规定处罚。**第三十四条**　违反本办法第十三条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未对送餐人员进行食品安全培训和管理，或者送餐单位未对送餐人员进行食品安全培训和管理，或者未按要求保存培训记录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三十五条**　违反本办法第十四条规定，送餐人员未履行使用安全、无害的配送容器等义务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对送餐人员所在单位按照食品安全法第一百三十二条的规定处罚。**第三十六条**　违反本办法第十五条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自建网站餐饮服务提供者未按要求记录、保存网络订餐信息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三十七条**　违反本办法第十六条第一款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未对入网餐饮服务提供者的经营行为进行抽查和监测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违反本办法第十六条第二款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发现入网餐饮服务提供者存在违法行为，未及时制止并立即报告入网餐饮服务提供者所在地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的，或者发现入网餐饮服务提供者存在严重违法行为，未立即停止提供网络交易平台服务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三十一条的规定处罚。**第三十八条**　违反本办法第十七条规定，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未按要求建立消费者投诉举报处理制度，公开投诉举报方式，或者未对涉及消费者食品安全的投诉举报及时进行处理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三十九条**　违反本办法第十八条第（一）项规定，入网餐饮服务提供者未履行制定实施原料控制要求等义务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的规定处罚。违反本办法第十八条第（二）项规定，入网餐饮服务提供者使用腐败变质、油脂酸败、霉变生虫、污秽不洁、混有异物、掺假掺杂或者感官性状异常等原料加工食品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四条第一款的规定处罚。违反本办法第十八条第（三）项规定，入网餐饮服务提供者未定期维护食品贮存、加工、清洗消毒等设施、设备，或者未定期清洗和校验保温、冷藏和冷冻等设施、设备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的规定处罚。违反本办法第十八条第（四）项、第（五）项规定，入网餐饮服务提供者将订单委托其他食品经营者加工制作，或者网络销售的餐饮食品未与实体店销售的餐饮食品质量安全保持一致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四十条**　违反本办法第十九条规定，入网餐饮服务提供者未履行相应的包装义务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第四十一条**　违反本办法第二十条规定，入网餐饮服务提供者配送有保鲜、保温、冷藏或者冷冻等特殊要求食品，未采取能保证食品安全的保存、配送措施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三十二条的规定处罚。**第四十二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对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违法行为作出处罚决定之日起20个工作日内在网上公开行政处罚决定书。**第四十三条**　省、自治区、直辖市的地方性法规和政府规章对小餐饮网络经营作出规定的，按照其规定执行。本办法对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违法行为的查处未作规定的，按照《网络食品安全违法行为查处办法》执行。**第四十四条**　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和入网餐饮服务提供者违反食品安全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四十五条**　餐饮服务连锁公司总部建立网站为其门店提供网络交易服务的，参照本办法关于网络餐饮服务第三方平台提供者的规定执行。**第四十六条**　本办法自2018年1月1日起施行。 |